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81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김선교·김예지·우재준

김성원 • 구자근 • 김석기

김상훈 · 송석준 · 이헌승
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「형법」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(법 제80조제1항),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법 제80조제3항).

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.

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(안 제80조 제3항),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(안 제80조제5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제3항 중 "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"를 "제외된 사람(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)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,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0조(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제80조(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의 배제) ① (현행과 같음) 의 배제) ① (생 략)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된 사람(같은 항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하나에 해당하나 제6조에 따라 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 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 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 람을 포함한다)이 다음 각 호 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 여 지원을 할 수 없다.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-----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(생 략) ④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

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 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,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 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⑤ (생략)